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농가 이행 지원방안 알림

1. 관련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별표3), 퇴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18-115호).
2.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에 대비하여 우리부는 농가 준비 사항 안내, 교육·홍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등 기준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농가 이행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알려드리니,
3. 해당 기관에서는 T/F 구성·운영, 농가 대상 제도시행 및 준비사항 안내, 신청서 접수 및 컨설팅, 교육·홍보 등 기관별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기준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농가에 대하여 부숙도 검사 등을 신청 받아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니, 시도(시군)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 및 독려하여 주시고 접수결과(11.18일), 추진계획(11.22일), 부숙도 이행 지원계획(11.29일) 등을 마련하여 기한내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에서는 각 실적 제출시 시도 및 축산환경관리원(이정식팀장 1079sky@ilem.or.kr)에 동시 제출

- 붙임 : 1.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농가 이행 지원방안 1부.
 2.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 접수 결과(양식) 1부.
 3. 퇴비 부숙도 컨설팅, 지도점검 결과(양식)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환경부장관(물환경정책과장), 농촌진흥청장(식량산업기술팀장), 서울특별시장(물재생시설과장), 부산광역시
 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
 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축산과장), 경기도
 지사(축산정책과장), 강원도지사(축산과장), 충청북도지사(축수산과장), 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 전라북도
 지사(축산과장), 전라남도지사(축산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축산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축산과장),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축산과장),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제주 친환경방역부장, (사)전국한우협회, (사)
 한국낙농육우협회, (사)대한한돈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육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토종닭협회

주무관 **천행수** 행정사무관 **구현정** 축산환경자원과 전결 2019. 10. 31.
 장 **박홍식**

협조자

시행 축산환경자원과-5506 (2019. 10. 31.)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358 팩스번호 044-863-9218 / jsan506@korea.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